

# 예천군민장학회 부분감사 결과

## 감사개요

-  감사기간 : 2015. 6. 9. ~ 6. 11.(3일간)
-  감사범위 : 2013. 6. ~ 2015.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업무전반
-  감 사 반 : 법무감사담당 외 2명
-  감사내용
  - 기금 관리 및 운영 현황
  - 장학사업 추진실태 및 장학생 선발 적정 여부
  - 장학회 운영비 집행 등

## 지적사항 총괄

-  지적건수 : 8건
-  조치결과
  - 확인서 : 2건
  - 현지시정 및 보완 조치 : 6건

## 주요 지적사항

### ① 신용카드 결재계좌 잔액 불일치

- 지방재정법 제71조에 지출원은 법령, 조례, 규칙 또는 계약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,  
「예천군 재무회계 규칙」 제106조(출납의 정리구분) 세입세출에 속하는 것은 연도별, 회계별, 세입세출별로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고, 제120조(세입세출일계표)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금의 출납이 발생할 때마다 출납과 현금잔액을 세입세출 일계표에 의하여 그 다음날 해당 관서별 징수관과 지출원에게 제출하여 하고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세입세출일계표를 전자적으로 제출(전송)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음에도
- (재)예천군민장학회에서는 신용카드 결재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이용 대금명세서의 사용내역과 일치하도록 매월 확인하여야 하나 2012.3.27일 312,000원에 대하여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가 아닌 예천군민장학회 카드결재 계좌로 식대를 입금하여 잔액이 불일치한 사실이 있으며, 2012~2014년도까지 발생한 이자 4,511원에 대하여도 입금조치 하지 않아 잔액이 불일치한 사실이 있음
- ▶ 식대 312,000원을 정당한 채권을 가진 자에게 지급하고, 2012~2014년도 발생한 이자는 입금조치하고,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

## ②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위반

-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10대 원칙 중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면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은 물론 당해 회계연도를 경과한 후에는 집행 할 수 없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업무와 관련하여 현년도 예산에서 집행할 수 없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
- (재)예천군민장학회에서는 군민장학회 사무실 각종 잡화 구입 시 전년도 (2013년)발생한 23,200원에 대해 현년도(2014년)예산에 포함해 집행한 사실이 있음
- ▶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.